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9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1일 주차요금 신설로 장시간 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과도한 주차요금의 부과 방지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 나.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일상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대
- 다.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 예방
 -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명칭 변경
- 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
 -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22. 3. 3. 제정)

2. 주요내용

- ①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상 노외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요금에 1일 주차요금 신설
 - (현행)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 운영(야간에 한함)
 - (개정) 노외주차장에 1일 주차요금 신설 * 노상주차장은 현행 유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요금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8,0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 개별주차장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환산요금의 6배를 적용하며,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조례 제25조의4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삭제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나눔카 사업자 협약 종료('22.12.31)로 공영주차장 내 나눔카주차구획(292면) 등 활용, 관련 조항(제25조의4) 삭제 등
 -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월정기권 할인 조항(별표1, 비고 제9호) 삭제
- 50면 이상의 市 공영·공공주차장 주차대수의 1.5% 이상 설치
- 이용대상, 설치장소, 주차구획 표시 등 세부사항 규정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정비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등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1> 규정'에 맞추어 조례(제25조) 개정 (안 제25조제3항 개정, 제25조제4항 및 <별도1>·<별도2> 삭제)

※ 주요 조문 비교 및 개정안

구분	서울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별도1 및 별도2)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현행 조항 신설일자	2009. 3. 18.	2018. 8. 10. (주차구역선 장애인전용표시 신설)
안내표지판 규격	70cm × 60cm	70cm × 60cm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규격	규정하지 않음	가로 1.3m × 세로 1.5m
주차구역선 장애인전용표시 규격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56cm × 세로 42cm	가로 50cm × 세로 58cm
안내표지판 기재내용	규정하지 않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안내
색상 (표지, 주차구역선, 바닥면 등)	바탕 : 청색, 휠체어 그림 : 백색	바닥면, 주차구역선 :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

④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통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 및 관련 조례(제7조의3)의 설치기준에 맞추어 조례(조례 제25조의3) 개정

설치 기준	주차장 조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조례
대상 시설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	50면 이상 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시장·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설치 대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신축시설(5% 이상) 기축시설(공공 5% 이상, 그 외 2% 이상)

※ 2022.1.28. 환경친화적자동차법시행령이 개정됨(100면→50면)에 따라 市 주차장 조례와 불일치하게 됨

- 현재 주차장 조례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규정과 달라 혼선 우려되므로 규정 통일
- (현행) 100면 이상 → (개정) 50면 이상

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명칭 개정

- 「주택법 시행령」 개정('22. 2. 11)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명칭 및 면적기준(50㎡이하 → 60㎡이하) 변경에 따라 “별표2”의 5, 명칭 변경
※ 원룸형 주택 → 소형 주택

⑥ 조문 내용 중 관련 조례 명칭 개정

- 「市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22. 3. 3)에 따라 「市 주차장 조례」 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의 조문 내용 중 관련 조례 명칭 변경
-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 제8330호, '22. 3. 3. 제정·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시행규칙 제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6, 「주택법시행령」제10 조,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비용(175백만원)관련 '24년 추경 예산 반영

※ 市 예산담당관 및 의회 협조 필요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10억원 미만)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의견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3. 8. 17. ~ 9. 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이선아(☎2133-235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주차구획의 크기·높이·기울기·재질
2. 바닥면·주차구획선의 장애인전용표시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제25조의3제1항 중 “100면”을 “50면”으로 한다.

제25조의4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도 5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도 6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의 설치기준란 중 “원룸형”을 “소형 주택”으로 한다.

별도 1 및 별도 2를 각각 삭제하고, 별도 5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도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요금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8,0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 개별주차장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환산요금의 6배를 적용하며,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 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은 주차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요금은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따른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 4. (생략)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주택 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10. (생략)	(현행과 같음)

<별도 5>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제25조의5제4항 관련)



<별도 6>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제25조의5제4항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 학교 부설주차장 설치한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주차장의 표지) ① (생략)</p> <p>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u>교육·학예에 관한 조례</u>로 따로 정한다.</p>	<p>제19조(주차장의 표지)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② (생략)</p> <p>③ <u>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u></p> <p>1. <u>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u></p>	<p>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u></p> <p>1. <u>주차구획의 크기·높이·기울기·재질</u></p>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도 1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신 설>

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도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잘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2. 바닥면·주차구획선의 장애인 전용표시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삭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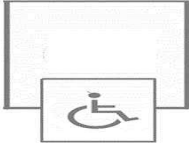
제25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50면 -----

② (생략)

<별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25조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 규격
가. 표지판 : 70cm × 6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cm × 세로 42cm
-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위 그림과 같이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에 걸쳐서 표기한다.

<별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제25조제4항 관련)



- 비 고 -

- 규격
가. 표지판 : 가로 70cm × 세로 6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56cm × 세로 42cm
-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지면에서 표지판까지 높이는 150cm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별도 1> (삭제)

<별도 2> (삭제)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
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
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
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도 5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도 6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도 5>

나눔카전용주차구획(제25조의4제
2항관련)



<신 설>

<별도 5>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제25조의5제4항
관련)



<별도6>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제25조의5제4항 관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 설치(「市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1호)

▷ 시(市) 공영주차장 700면 × 250천원 = 175,000천원

※ 1구획당 기존 삭선 및 신규도색 비용 250,000원 추정

4. 작성자 : 주차계획과 이선아(2133-2353)